

# 開 會 辭

權 寧 星\*

여러분 안녕하십니까.

지금부터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가 주최하고 統一院이 후원하는 「南北交流協力關聯法制度發展 세미나」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 法學研究所의 책임자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오늘의 세미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저희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는 1961년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부설연구기관인 比較法研究所로 발족하여 올해로서 창립 3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그 동안 우리 法學研究所는 研究論文集發刊과 각종 研究用役事業 그리고 學術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韓國의 法學 및 法制度의 발전을 위하여 부족하나마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. 특히 本研究所는 우리 민족의 중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南北關係 및 그 關聯法制度에 관해서 6건의 研究用役事業을 수행한 바 있었지만, 오늘의 이 세미나는 本研究所의 對外的인 學術行事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.

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될 「南北交流協力的 本格化過程에서 提起될 法的 問題點 및 對策」이라는 주제는 과거의 남북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과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‘南北基本合意書’와 그에 따른 ‘附屬合意書’의 채택은 남북간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평화와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南北韓間의 政治的인 合意의 土臺는, 그에 따른 南北間의 關係法令의 改正이나 補完 및 調整의 문제 뿐만 아니라, 交流·協力이 본격화될 시점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法制度的인 對策들을 보다 구체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함으로써, 그 法的인 土臺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를 우리들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. 물론 과거에도 ‘南北韓 法體制的 比較’나 ‘統一方案의 法的 問題’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있기도 하였으나,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장·단기적인 법제도 차원의 정비와 대응을 모색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.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단기적으로는 ‘南北基本合意書’ 및 ‘附屬合意書’의 구체적인 시행에 따르는 南北交流協力節次의 問題, 南北合作投資 및 對外共同投資의 問題, 通信手段의 이용 등 南北間의 交通通信의 問題 등이 있고, 보다 장기적으로는 南北間의 紛爭解決의 節次와 調停에 관한 問題, 南北住民의 自由往來 및 離散家族의 結合에 따른 民事法的인 契約締結과 더불어

\*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長

그 履行確保와 家族法的인 身分關係의 問題, 南北當局者間의 民·刑事 協力體系構築의 問題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.

오늘의 이 세미나가 본격적인 南北交流·協力 및 統一過程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러한 장·단기적인 중차대한 과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內容과 方向性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그 동안의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한 政治的인 合意의 過程이 忍苦의 산물이었듯이 그에 따른 기본적 합의를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효성이 있는 法的 裝置로서 다듬는 작업 또한 우리들의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고, 지금 당장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. 오늘의 이 세미나는 바로 이러한 課題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出發線上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오늘의 세미나의 意義가 있다고 봅니다.

마지막으로 이 세미나가 개최되기까지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統一院의 관계관 여러분들과 主題發表 및 討論을 위해 참석해 주신 斯界의 專門家 여러분들, 그리고 오늘의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傍聽客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

감사합니다.